

학생생활지도부장 및 교육전문직 회의자료

일시 : 2013.7.5.(금) 15:00

장소 :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 2013 여름방학 대비 학생생활지도 부장교사 및 교육전문직 회의



2013. 7. 5.(금)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http://www.ice.go.kr>

【학교생활안전지원과】

## 2013 여름방학 대비 학생생활지도 부장교사 및 교육전문직 회의 일정

- 일 시 : 2013. 07. 05.(금) 15:00 ~ 17:00
- 장 소 :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4층)
- 대 상 : 고등학교 학생부장, 중학교 간사교 학생부장,  
교육전문직 등 250명

### ● 일정

시 간	내 용	담 당
14:40~15:00	<input type="checkbox"/> 등록	
15:00~15:05	<input type="checkbox"/> 개회사 및 국민의례	생활지도팀장
15:05~15:10	<input type="checkbox"/> 교육감 인사 말씀	교육감
15:10~16:00	<input type="checkbox"/> 연수 -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배승민 인천해비리기아동센터소장
16:00~17:00	<input type="checkbox"/> 여름방학 대비 학생생활지도 계획	담당 장학사
17:00	<input type="checkbox"/> 폐회사	생활지도팀장

---

---

## 차 례

---

---

### <학생생활지도계획>

I. 개요 .....	1
II. 목적 .....	1
III. 추진방향 .....	1
IV. 지도대책 .....	2
1. 보람찬 방학생활을 위한 지도 .....	2
2. 가정과 연계 · 협력체계 강화 .....	3
3.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 예방 지도 .....	3
4. 학생비행 및 탈선 예방 지도 .....	4
5. 생명 존중 및 자기 존중 의식의 내면화 .....	5
6. 장기 결석자 및 가출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 .....	6
7. 학생사고 예방 지도 .....	6
8. 학교폭력신고전화(117) 및 학생고충신고전화(1588-7179)운영 활성화 .....	6
9. 다양한 야영/탐사/체험 수련활동 활성화 .....	7
10. 물놀이 안전교육 및 각종안전사고 예방교육 .....	8
11. 방학 중 일일등교 학생 지도 .....	9
12. 성교육 및 성폭력피해 예방교육의 충실 .....	9
13. 여름방학 중 합동교외 생활지도 .....	10

### < 회의자료 >

1.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협조 사항 .....	17
2. 201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실시 .....	26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제도 안내 .....	27
4. 학업중단 숙려제 .....	34
5. 학교폭력 · 가해학생 · 학부모지원 방안 .....	35
6. 학교폭력 나이스 입력 방법 .....	38
7. 제3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 .....	45
8.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 정책발굴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안내 .....	46
9. 2014년 교육청(학교) 평가지표 예시(안) .....	47

### < 연수자료 >

※ 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해바라기아동센터 · 배승민 소장> .....	63
---	----

# 학생생활지도계획

# 2013학년도 여름방학 학생생활지도계획

## I. 개요

- ※ 방학 중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불법취업(아르바이트)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유해환경 접촉기회와 유원지 등에서 학생비행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 철저
- ※ 여행 및 야외활동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특히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물놀이안전, 식중독, 인화물질 사용 등) 예방교육 강화
- ※ 독서활동, 봉사활동, 취미활동, 학생 야영·탐사·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학생생활지도 계획을 수립·추진
- ※ 생명존중 및 자기존중 내면화 교육 활성화

## II. 목적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 중·고등학생들의 불법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근절하며,
- 여름철 성(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비행과 등산·야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수상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며,
- 봉사활동, 취미활동, 수련활동, 현장 체험학습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III. 추진 방향

- 학교 실정에 맞는 여름방학 학생생활지도계획 수립·추진
- 여름방학 대비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 및 가정과의 협력체계 구축
- 방학 중 학급별 등교일, 전화, e-mail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학교와 학생 간 전달사항과 긴급한 비상연락 체제 유지

- 돌볼 학생에 대한 지속적 선도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청소년 상담 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학생 지도 관리
- 청소년 유해사이트(폭력·자살·음란 관련사이트) 접속 예방지도
- 최근 자살 증가에 따른 생명존중교육 실시
- 학교시설 관리 및 수상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철저
- 방학 전 바람직한 방학생활 계획, 생명존중교육,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금지, 안전사고 예방교육(특히 교통사고예방, 물놀이 안전)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발송
- 학생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학교홈페이지 활용 및 가정통신문 발송)

## IV. 지도대책

### 1. 보람찬 방학생활을 위한 지도

- 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별로 여름방학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교육 실시
- 나. 학교 및 학급 비상 연락망 체계 구축 및 정비
- 다. 학생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 계획을 충실히 세우도록 지도
  - 1) 학습활동, 취미활동, 독서활동 등 일일 생활계획 수립 실천
  - 2) 반드시 부모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행선지를 밝힌 후 외출
  - 3) 원거리 또는 장기 여행 시 학교에 사전 신고
  - 4) 방학 중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학생은, 학교에 해외여행 사전 승인을 받고 다녀오도록 지도
  - 5) 생활일기 쓰기를 권장하여 방학 중 규칙적인 생활 유도
- 라. 방학 전 [생활 계획표] 작성 후 담임 확인 및 지도
- 마. 건전한 소비생활 지도
  - 1) 에너지 절약 실천 지도
  - 2) 가정통신문을 통한 건전 소비생활 계도 (에너지 절약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 바. 취미·소질·적성 키우기
- 사. 유적지, 등산, 자연탐사활동 권장
- 아. 공중질서 지키기 및 환경보호 교육

## 2. 가정과 연계·협력체계 강화

가.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방학 중 자녀지도 당부

- 1) 계획적인 생활로 건강한 심신 단련
- 2) 자녀와 동행하는 여행, 등산, 자연탐사활동 권장
- 3) 바른 생활습관 및 예절교육 익히기 등

나. 학부모대상 홍보

- 1)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도

- 2) 자녀의 특기·적성 육성

- 3) 학생신분을 지키는 생활태도 기르기

- 4) 1일 1시간 자녀와 대화하기

- 5) 자녀의 고민사항 파악, 해결

- 6)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및 불법 취업 엄금

- 7) 유원지(해수욕장 등)에서 학생들만의 야영이나 숙박금지 및 음주 예방 지도

- 지도교사 및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학생들만의 야영이나 숙박 금지 가정통신문에 안내

- 8) 학교와 가정 연계한 성교육 실시

- 성폭력 사안은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퇴학처분 등) 및 법적 처벌이 있음을 알리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

-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치료 지원(인천광역시 의료원 ONE-STOP 지원센터, 부평 성모병원 ONE-STOP 지원센터 안내)

- 9) 불량만화, 음란, 폭력성 비디오 및 정보 매체의 폐해 예방 지도

- 10) 요선도 학생 및 재입학생에 대한 지도 강화

-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점검 및 상담 지도(담임 또는 결연 교사)

- 학교별 장애우 시설 봉사활동, 극기수련, 체험활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3.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 예방 지도

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파악 및 계도 실시

- 1)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지도 및 불법고용 금지 홍보·계도
  - 2) 유홍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 취업 및 아르바이트 금지 지도
- 나.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유해 환경 정화 참여
- 1) 유관기관(검찰, 경찰, 자치단체 등)과의 협동교외생활지도 적극 참여
  - 2) 방학 중 조장교별 연합교외생활지도 계획 수립 및 실시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해업소 협동 단속에 적극 참여
- 다. 방학 전 학생회 및 학급회를 통해 유해 매체물 접촉예방 회의 개최
- 1) 학생회 및 학급회를 통해 유해 매체물 접촉 금지를 위한 자율정화 인식 확산
  - 2) 유해 매체물 접촉금지
    - 방학 전 정보통신윤리교육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 교육실시)
    - PC·인터넷방, 만화방 출입 자제하기
    - 음란 CD 안보기, 인터넷(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사이트 접속 안하기
    -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안 가기

#### 4. 학생비행 및 탈선 예방 지도

- 가. 학생비행 및 탈선행위 사전 예방 지도 철저
- 1)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 및 업소 출입 지도 철저
  - 2) 약물 오·남용(흡연, 음주, 본드 등) 예방지도 강화
  - 3) 폭력서클 등 불량서클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 폭력서클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학 중 폭력서클에 참가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철저
  - 4)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상담활동 및 학부모 연계 지도 강화
  - 5) 건전한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교육
  - 6) 질서·법규 지키기 등 민주시민교육 지도
- 나. 오토바이 폭주족 실태 파악 및 사전예방 지도
- 다. 선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 실시
- 라.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지도
- 1) 우범지역,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불량만화방, 전자오락실)에 출입하지 않기
  - 2) 골목길이나 야간에 혼자 다니지 않고 일찍 귀가하기
  - 3) 언행, 복장이 불량하게 보이는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가지 않기

- 4) 용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지 않기
- 5) 교육청 주관 학동교외생활지도 적극 참여
- 6) 피해 신고 및 상담전화 안내
  - 학교폭력신고 : 117
  - 인천광역시교육청 : 420-8267
  - 지역교육청 : 1588-7179
  - 여성 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가정폭력, 성폭력 등)
  -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 긴급전화(국번 없이 1388)
  - 성폭력 피해 상담(1899-3075,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통합)
- 7) 사이버 폭력(카톡 및 왕따 카페 등) 예방을 위한 지도
  - 사이버 상에서의 언어폭력, 왕따, 따돌림 등도 학교폭력으로 조치됨을 안내

마. 학동(연합) 교외생활지도 강화- [별도계획] p10 참조

## 5. 생명 존중 및 자기 존중 의식의 내면화

### 가. 자살 예방지도

- 1) 학기 중 또는 방학 전 담임교사는 학생들과의 개인별 면담을 활성화하고, 평소와 다른 모습의 보이는 학생에 대한 상담교사의 사전 상담활동
- 2) 학부모에게 서한문 보내기 등 가정지도 방안 수립 : 자살 징후 조기 발견 및 자녀와의 대화 갖기 안내 등
- 3) 자살사이트 및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 4) 자살 경계 징후

- 자살을 표현한다("어딘가 멀리 가고 싶다", "잠들어 깨지 않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등의 메모)
- 실제 자해행위를 하거나, 알코올 등 각종 약물의 남용이 눈에 띈다.
- 과도하게 위험한 행위를 한다.
- 결별을 준비한다(중요 물건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일기·편지·사진을 처분하거나, 빌린 물건을 반환함)
- 가정·학교에서의 행동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있다(친구와의 사귐을 중지하거나 성적이 크게 떨어지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5) 평소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훈화, 관련교과, 특강 등을 통하여 생명 존중 의식과 자기 존중 가치관 교육 활성화(학기별 1회 이상 교육 실시)

#### 나. 자살예방 개발자료 <자전거 타고 가는 희망 동행> CD자료 활용

- 1) 교육 대상자별 사회심리적 발달과정에 따른 교육내용과 예방적 접근
- 2)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고려한 단기적이면서 효율적인 교육 내용
- 3) 교육 내용에 따른 대상자별 파워포인트 자료 및 강의 매뉴얼 제공
- 4) <자·전·거>라는 축약어를 통한 위기시 긴급 대처방법 숙지 용이
- 5)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과 교육 관계자의 검토 후 최종 보완된 자료임

#### 다. 자살 사안 발생시 - 즉시 전화 보고 후 팩스로 사안보고

- 고등학교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교육지원과)

### 6. 장기 결석자 및 가출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

가. 가출징후 학생 조기파악 및 결연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 상담 철저

나. 불건전업소 동반취업 사전차단 및 동반 가출 예방지도, 등교 후 적응지도 철저

다. 하계휴가 중 담임교사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 결기 및 편지 쓰기 운동 전개

라. 가출학생 발생 시 학부모와 학생 찾기 방법 강구

마. 결석생 조기파악 및 학교주변 불량배와 연계 차단

바.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 7. 학생사고 예방 지도

가. 비상연락망 사전정비와 함께 사안 발생시 즉시 수습대응 및 보고체계 구축

나. 학생사고 발생 후 학교별, 교육청별 후속 대책 수립·시행

다. 시(지역)교육청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8. 학교폭력신고전화(117) 및 학생고충신고전화(1588-7179) 운영 활성화

### 가. 홍보

#### 1) 홍보 내용

- 신고 전화번호, 신고대상 및 방법, 운영 장소, 신고사항 처리 절차 등
- 117(인천지방경찰청) : 신고접수, 초기 상담, 학교 및 경찰서 연계·처리, 현장 조사 등
- 1588-7179(주간 운영) : 학생고충 신고 상담

#### 2) 홍보 방법

- 각종 생활지도 협의회 및 연수 시 홍보
- 학교폭력 신고함 및 학교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 번호 제작 부착
- 학교 및 학급게시판에 전화 번호 및 신고 방법 홍보
- 학생증에 전화 번호 및 신고 방법 인쇄 홍보
- 『학부모의 날』 운영 시 학부모 대상 홍보, 방학 전 가정통신문 발송

### 나. 운영 활성화 대책

- 1)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운영일지 기록 비치
- 2) 친절과 봉사로 상담 및 신고 사항 해결, 신고자의 신뢰 획득
- 3) 신고사항은 비밀이 유지되고 반드시 해결됨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 9. 다양한 야영/탐사/체험 수련활동 활성화

### 가. 야영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

- 야영수련 후보지 및 시설 사전 답사 후 계획 수립

### 나. 학교실정에 맞도록 실시하되, 가급적 소규모 단위나 동아리 단위로 실시

#### 1) 간부학생 등 특정선발 학생만을 위한 수련 활동은 지양하고 다양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참여 유도

#### 2) 소규모, 주제별, 사제동행 단체 활동 및 수련 활동 권장

### 다. 환경탐사, 도·농 학교 간 교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농촌 현장학습 등 수련 주제 다양화

### 라. 환경보건을 위한 환경 친화적 수련활동 추진 권장

마. 학교별 자체 야영수련 시 수련프로그램 내부결재 및 사전지도, 안전지도 철저  
바. 민간 시설 수련업체 위탁 시 수련 경비 등에 물의가 없도록 예방 지도

- 1) 미등록 수련시설 이용 금지
- 2) 수련경비로 인한 물의 없도록 지도(수련 후 수련비 정산 공개)
- 3) 수련기관에 일괄 위탁교육 지양
- 4) 인증기관 및 프로그램 활용

사. 야영수련은 반드시 사제동행으로 실시

- 1) 학내 동아리 등 남녀/선후배간의 독자적 야외 수련회 금지
- 2) 기타 종교단체 등 외부기관 수련회 참여시 반드시 부모님 승인을 받고 참여

## 10. 물놀이 안전교육 및 각종안전사고 예방교육

가. 여름방학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1) 교육기간 : 2013. 6. 15. ~ 7. 19.(여름방학 전)
- 2) 익수사고 예상을 위한 조·종례 시 사전 지도
- 3) 방학 전 사전 유인물을 통해 익수사고 예방교육 및 지도
- 4) 체험학습 및 각종 학생수련 시 사전 안전교육 강화  
*(학교생활안전지원과-6684, 2013. 4. 3. 참조)*

- 5) 각종 재난(화재·방재 등) 대비교육
- 6) 취사도구 사용 취급 지도
- 7) 계곡에서의 야영활동 주의 안내
- 8) 식중독·식수관리 등에 대한 안전지도
- 9) 킥보드·오토바이·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지도

나. 학교별 중점 점검 사항

- 1) 도서지역은 수영금지 장소(저수지, 해수욕장 등) 실태조사 및 표지판 설치(유관기관과 협조)
- 2) 수상안전, 교통안전, 산악등반 안전 등의 지도를 위한 시간 확보 및 지도
- 3)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 강화 및 순찰지도
- 4) 학교홈페이지 활용,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와의 연계 지도(비상연락망 및 부모님과의 연락망 정비)
- 5) 사안 발생 시 즉시 대처 방안 강구 및 신속한 보고

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 1) 각급 학교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담당교사 지정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주관
  - 사고발생 시 즉시 보고
-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내용
  - 물놀이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대처 요령 지도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교재 배포, 지도

라. 수상 안전지도

- 1) 일반적인 유의사항 : 허약 체질, 질환에 대한 유의점, 수심, 수질, 수영기능 등
- 2) 입수 전 수중에서의 이상 · 익사자 구출, 구급법에 대한 지도
- 3) 입수 전 반드시 체조 및 안전활동(신체에 물 묻히기 등) 실시
- 4) 수상 시설 및 주변 환경 안전점검(수온, 유속 등) 실시
- 5) 바닷가 갯골(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고랑)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 6)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인공호흡, 구조활동 등) 교육 실시 : 유관기관 교육지원 협조 요청
  - 수상 레저 활동 장소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교육활동 협조 요청
- 7) 인천해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 학교 학생 다수가 바닷가 또는 인근 해상 레저활동 시 관할 파출소 및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에 '원거리수상레저 활동신고' 후 활동(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나가서 활동 하는 경우)
  - 바닷가 수상 레저 활동 시 필히 구명동의(구명복) 착용
  - 해양사고 발생 목격 시 122(해양 긴급신고 전화)에 신고

## 11. 방학 중 일일등교 학생 지도

가. 학생 출결상황 파악 철저

나. 교내 · 외 청소지도

다. 학생다운 용의 복장 갖추기 지도

라. 담임과의 대화의 시간 마련 및 심성지도(전화상담 및 E-Mail상담)

마. 등교 학급을 위한 일일 프로그램 운영

- 바. 과제물에 대한 중간 점검 및 독서지도
- 사. 봉사활동기관 안내

## 12. 성교육 및 성폭력피해 예방교육의 충실

- 가.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 나. 건전한 성 윤리를 위한 사이버 문화교육 실시
- 다. 가정, 지역사회, 학교의 연계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의식 확립
- 라. 성폭력 피해 예방지도 강화

## 13. 여름방학 중 합동교외 생활지도

### 가. 목적

여름방학 중 유원지·피서지·휴양지 등 행락지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생활풍토 확립

### 나. 방침

- 1) 고등학교는 지역별 학생부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지원청은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 2) 여름방학 중 행락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교외 생활지도 전개
- 3)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집중단속 실시
- 4) 지구별 교외 생활지도반 편성 운영
- 5) 시 교육청에서 순회지도

### 다. 세부시행 계획

- 1) 기간 : 2013. 07. 22(월) ~ 08. 10(토) 20일간
- 2) 시간 : 15:00 - 21:00
- 3) 장소 및 담당교육청

장소	순찰 담당	담당 교육청	지도교사	교육청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첨부자료] 참조	시교육청	5명	담당자 1명
월미도 및 자체 지정장소	남부교육청 관내중학교	남부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 운영	
부평역 및 부평문화의 거리	북부교육청 관내중학교	북부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 운영	
구월동 로데오거리	동부교육청 관내중학교	동부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 운영	
완정지구 및 계양지구 자체 지정장소	서부교육청 관내중학교	서부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 운영	
강화읍 일대	강화지역관내 중 · 고등학교	강화교육청	자체 계획 수립 · 운영	

## 라. 사용시설

- 1) 합동교외생활지도 현장에 본부 설치(중부경찰서 협조)
- 2) 교직원수련원 지도교사용으로 지도기간(07.22. - 08.10.) 중 1실(15평) 사용  
- 지도교사는 차량을 교직원 수련원에 주차하고 현장 본부로 이동

### 3) 지도 및 단속 내용

- 행락질서 캠페인
- 학생비행 · 탈선 예방 및 지도(순회 및 순찰지도)
-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 학생출입 단속
- 남 · 여 학생 혼숙 단속(경찰과 합동 단속)
-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참여 유도

### 4) 지도 · 단속을 위한 추진 사항

-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도일지 비치<양식 1,2>
- 당일 지도교사는 활동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여 일지 기록 및 순회지도, 1명은 본부에 위치하여 수시 연락체계 구축하고, 2인 1조 편성 순찰활동
- 당일 근무상황을 지도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인수 · 인계 철저(중심학교 부장교사 근무상황 지도일지 인수인계 담당)
-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지도 후 귀가 조치하고, 경찰에 입건되는 사안은 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4208-267)에 즉시 전화 연락하며, 추후 학생사고 보고 양식에 의거 서면 보고
- 우천 시에도 지도활동은 계속하며 지도일지는 지도본부에 보관
- 지도 · 단속 대상학생은 대상자의 소속 학교, 학년 반, 집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 (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

- 학교별로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권장(자원봉사자)
- 지도교사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종료시간까지 지도 활동 철저
- 근무 중 음주행위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함
- 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은 합동지도 경찰(중부경찰서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여름파출소센터 근무 경찰 ☎112)과 공조하여 지도 조치

#### 마. 행정사항

- 1) 합동교외생활지도는 학생부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부장 참석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해당학교 교사가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사전에 참석일 중심학교에 연락 요망)
- 2) 합동교외생활지도 중심학교는 3일전 해당학교 학생부장에게 연락하여 참석여부 확인할 것(근무상황일지에 참석 기재)
- 3) 지도교사는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근무 종료 후 인천교직원수련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 2013 여름방학 합동교외생활지도 담당자 명단】

장소 : 을왕리 해수욕장

시간 : 15:00-21:00 인천광역시교육청

월 일	해당교								중심학교		시교 육정	
	1		2		3		4					
	학교명	이름	학교명	이름	학교명	이름	학교명	이름	학교명	이름		
7.22(월)	안남고	이정길	계양고	박인철	서운고	이원호	직전여고	이진선	인천공항고	윤미선	유충열	
7.23(화)	효성고	이재학	계산여고	이상훈	계산공고	박광천	예일고	박승열	계산고	박성훈	조명곤	
7.24(수)	서원고	이임복	기좌고	김두경	가정고	남인선	기림고	이기봉	인천시립고	이대영	방명환	
7.25(목)	경인여고	박재권	신현고	문혜란	해원고	권희범	초은고	김대엽	청라고	임재익	강주희	
7.26(금)	인천체고	이선태	원당고	조강일	서인천고	하인목	대인고	서경원	백석고	이강을	윤재환	
7.27(토)	한진고	윤병운	겸하고	안정애	인천정보고	지정영	인일여고	박갑원	제물포고	천재영	유충열	
7.28(일)	인성여고	최윤숙	동신고	김영호	광성고	오동화	중앙여상	한상국	인천여상	허태련	조명곤	
7.29(월)	영화평생경영고	김상범	인하고	현문찬	인천비전고	정원채	인화여고	장연환	선인고	이태연	방명환	
7.30(화)	제물포체육고	김홍주	해송고	이성희	인천하이텍고	안병기	박문여고	김정우	도화기공	성용구	한승재	
7.31(수)	영종국제체육고	서종연	영종고	조성윤	부개고	권오승	연수여고	권혁성	부평공고	김진동	윤재환	
8.1(목)	부광여고	김미영	부개여고	이흥구	삼산고	최희석	인천부흥고	유준기	부평고	남사현	유충열	
8.2(금)	명신여고	신말윤	부평시민고	이하균	인천산곡고	김순길	부광고	이인영	인천영선고	최영호	조명곤	
8.3(토)	세일고	박용철	인천세무고	김기식	제일고	강천중	인천외고	김두현	상정고	이병진	방명환	
8.4(일)	인평자동차고	김범인	부평여고	윤태철	석정여고	김상진	인천남고	김문극	인천기계공고	배성진	강주희	
8.5(월)	정식항공고	최진식	인천고	한준희	학익여고	이호영	인하시내부고	이동구	문화정보고	문재성	윤재환	
8.6(화)	학익고	최경호	동인천고	권혁돈	인천에슬고	이태용	문화문화체육고	김진태	만수고	정병석	유충열	
8.7(수)	송덕여고 신명여고	김홍년 우선희	인명여고	신호철	신송고	이상섭	문일여고	문상희	고잔고	이우평	조명곤	
8.8(목)	연송고	양태영	인제고	서상열	인천논현고	나재철	남동고	신재림	도립고	조항노	방명환	
8.9(금)	송천고	김해민	옥련여고	정연호	인천여고	조영은	생활과학고	소병순	연수고	안효준	한승재	
8.10(토)	해양과학고	김영건	청학공고	김영웅	송도고	김준태	대건고	김철기	인천여공고	안명돈	윤재환	

※ 생활지도 일자는 학교별 순환을 원칙으로 함

※ 조장교 순으로 배정함

※ 기숙형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미추홀외국어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인천해사고, 인천하늘고, 인천진산과학고는 대기조로 편성함

- 합동교외생활지도는 학생부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부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학교 교사가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지역교육청에서는 지도, 단속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2학기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1부를 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제출(<양식3>, 2013. 8. 16(금) 까지)
- 합동교외생활지도 여비는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적정 지급
- 학생부장은 별도공문 없이 당일 합동교외생활지도에 참석하여 주시고, 중심학교는 미리 당일 학교부장에게 연락, 참석여부 확인 요망
- 인천공항고등학교에서는 합동교외생활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 22일 을왕리 해수욕장 지도본부에 필요 장비 설치 협조

<양식 1>

## 2013 학동교외생활지도일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일시	2013년 월 일	시 분 시 분	장소								
지도 교사	소속			성명							
장학사											
유관 기관 (인원)											
지도 사항	순회지도 시간	순회지역	지도내용	비고							
	-			전단배포 ( )매							
	-										
	-										
	-										
	지도 실적	위반 내용	음주			흡연	폭력	금품 갈취	부녀자 희롱	소란 행위	유해업소 출입
인원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의일 또는 차후 교외생활지도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										

### <양식 2>

# 2013 합동교외지도 적발학생 인적사항

## 을왕리 해수욕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 확인방법 - 학교 및 집에 연락, 전화번호, 학생증, 신분증, 기타 방법 등 기재

### 확인자

(인)

<양식 3>

### 【2013 여름방학 중 지역별 학교 교외 생활지도 실적 및 평가】

지역 :

○○교육지원청

구 분	단속참가 연 회수	단속 참가자수			단속참가 학 교 수	예방지도 건수
		전문직	교 사	계		
인천시교육청						

위반 내용	음주	흡연	폭력	금품 갈취	부녀자 희 롱	소란 행위	유해업소 출 입	혼성 캡핑	기타	계
단속 인원										

○ 문 제 점

○ 향후 대책 및 건의사항

2013. 8. 19.(금)까지 보고서 제출

# 회의자료

### □ 가해학생 전학 및 퇴학 조치

- 가해학생 전학조치 시 피해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치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가 다른 경우, 학급교체, 출석정지만으로 교육이 가능한 경우 전학 조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흡연, 교권침해 등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지어 전학조치

### □ 중학교 가해 행위 폭력 사안에 대한 고등학교에서의 처리

- 졸업한 중학교에서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이중조치가 되므로 새로운 조치는 필요 없음
- 다만 졸업한 중학교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개최되지 않았던 사안의 경우 가·피해 학생이 재학중인 가·피해 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여야 함
- 이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재학중인 고등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 □ 가해학생에 대한 병과 조치

- 가해학생 조치시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 조치(1호~9호)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1호~9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만을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①, 17조 ②)

### □ 학생 인권 존중 풍토 조성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을 통해 교원과 학생·학부모간 신뢰 구축
- 학생 징계시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학생생활규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 전면 개정

###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운영

- 위탁운영 시스템은 학교 서버 운영방식으로 전환 조치
- 상별점제로 인해 전학 또는 퇴학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점 상쇄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행

학생 체벌금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벌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체벌 금지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반드시 실시(1회 이상)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민원

- 휴대폰 사용의 교육적 조치 없이 장기간 학교에서 보관하는 사항
  - 휴대폰 보관 시 분실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
-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과 다르게 두발을 제한하는 경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실시(세부내용 1 참조)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자살 예방 교육 실시(학기별 1회 이상)
- 예방 위주의 생명 존중 교육 실시
- 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 '자살 및 우울증요인' 결과가 나타난 학생은 반드시 가정과 연계하여 상담 및 체계적인 관리
- 고위험군 학생은 Wee 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성폭력 피해 예방지도 강화
- 학생 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연 1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연2회)
- 관리자 및 교직원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연2회 이상)
- 학교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인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주지할 것(CCTV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 실시

- 교사 · 학부모 ·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연수(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학교폭력 실태 설문 조사 실시(분기별 1회 반드시 실시)
  - 학교폭력 예방 연수 자료로 활용
  - 설문 조사시 반드시 일진 등 폭력단체 존재 여부 확인

□ 청소년 비행 사전 차단

- 학교주변 상가, 공원 등 청소년 비행 발생 장소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 음주, 흡연, 폭행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 시도평가 항목
- 운영방법 : 통신업체를 이용한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통학버스 운영, 도서지역 및 소규모학교는 자체알리미서비스(핸드폰 문자 전송 등) 활용

□ 학업중단학생 최소(세부 내용 2 참조)

- Wee클래스 및 Wee센터를 통한 부적응 학생 상담 활성화
  - Wee클래스 217개교, Wee센터 7개 기관
  - 인천 행복한 가정형 Wee센터 : 2010. 12월 개소  
(☎ 515-7922, Fax 515-7923,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774-21)

- 장 · 단기 대안교육기관 위탁 적극 활용

- 장기 4기관, 단기 28기관

- 학업중단 학생현황 조사(분기 1회) 및 컨설팅

□ 학교폭력 가 · 피해 학생, 학부모 교육 · 치료 지원(세부 내용 3 참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부모에 대한 상담 · 치료지원 강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내실있는 피해학생 · 학부모 상담 · 치료지원
  - 시교육청 Wee 센터를 '피해학생 · 학부모 상담 · 치료 전담기관' 운영
- 학교폭력 가해 학생 · 학부모에 대한 즉시적 교육 · 치료 지원

○ 특별교육 이수 기관

- 교육청 : Wee센터 장·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32개 기관),

단위학교특별교육이수(학교내 대안교실-130개교)

- 인천시 : 청소년상담지원센터(7개)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치료 지원 계획」 '12.4.10(화) 발송 공문 참조

○ 대안교육위탁기관 현황

구분	학교명	교육과정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장기 (6기관)	성산효마을학교	중·고	433-1921~2	421-4575	
	한오름학교	고	899-1591	899-1590	
	아름다운학교	중·고	873-5900	873-5665	
	하늘샘학교	중·고	434-9393	463-9393	
	푸른꿈학교	고	763-2288	763-2289	
	사랑의비전학교	고	070-8283-1691	513-0691	
단기 (30기관)	해피스쿨	-	765-7105	765-7106	본청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	432-7179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	764-7179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	510-1525	514-1528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	460-6371	460-6378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	555-7179	553-7179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	-	930-7761	930-7829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	515-7922	515-7923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515-7811	515-7814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721-2306	721-2320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547-0855	547-0857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862-8751	862-8753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777-1388	766-1387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509-8910	509-8917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584-1388	584-1389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819-7308	818-1760	
	인천청소년단기쉼터 바다의별	-	438-1318	439-1318	
	사)청소년복지단체 하늘목장	-	528-2216	528-2218	
	인천청소년여자쉼터	-	468-1318	469-1380	
	우리들청소년쉼터	-	442-1388	442-1389	
	인천여성복지관 상담실	-	440-6512	434-6439	
	인천보라매아동센터	-	747-1102	747-1106	
	김숙자언어인지클리닉	-	263-5842	507-5842	
	인천자모원 바다의 별학교	-	772-0071	772-0073	
	꾸미루미청소년학교	-	424-5007	424-5007	
	한민족랩넌트학교	-	888-8291	232-0459	
	밝은마을 마리학교	-	937-2313	937-236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031-482-6317	031-482-6319	
	인성교육센터	-	874-4044	874-404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70-4420-1934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학부모 교육·치료 지원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즉시적 교육·치료 지원
-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청렴도 향상
  - 2010~2012년 청렴도 측정 점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편차 (2011년대비)	2013년 목표
외부청렴도	점수	8.45	8.45	8.17	△0.28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교장 자율·책임제 강화
    - ◆ 수학여행·수련활동 대상업체에 학교장 명의 청렴안내문 발송
      - 발송대상 : 수학여행 위탁업체, 버스업체, 숙박시설, 식당, 수련시설 등
      - 발송시기 : 업체선정,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시(업체별 1회)
      - 발송방법 : 우편(최소 현장학습 실시 2~3일 전까지 도착)
    - ◆ 현장학습 참가교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 작성대상 : 사전답사, 현장학습 인솔(수학여행, 수련활동) 참가 교직원 전체
      - 사전답사, 현장학습 인솔 전 “현장학습 참가교직원 청렴서약서” 작성하여 비치
    - ◆ 교직원 청렴연수 실시
      - 연수시기 : 사전답사 및 현장학습 출발 전, 계약 전
      - 연수내용 :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준수, 업무처리과정 부패방지 노력, 책임감,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향응 등 접대 금지,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등
- ※ 2013년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부록2(p62)참조

- 상시 감찰활동 전개
  - ◆ 현장학습공개방 운영
    - 입력대상 : 수학여행·수련활동
    - 주요내용 : 활동기간, 행선지, 징수액, 사전답사 결과, 활성화위원회 심의 내용, 교직원여비, 정산내용, 만족도 및 특이사항, 담당자 성명 등
    - 입력내용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 집중 점검

◆ 현장학습 운영 지도점검 실시

- 실시시기 : 2013. 7월 ~ 8월경
- 내용 : 현장학습 투명성 제고, 문제점과 우수사례 전파
- 추진방향 : 부패유발요인 및 투명한 현장학습 이행의 장애요인 발굴에 따른 대책 마련과 우수사례 발굴,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보완
- 대상기관 : 추후 통보(지역교육청 자체 운영)

◆ 현장학습 청렴 쟁크탱크 운영

- 교육청, 교원, 일반직으로 구성된 청렴쟁크탱크 운영
- 추후 별도 구성 및 협의회 개최

○ 현장학습 추진제도 개선

◆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명확화

- ◆ 동일한 기관 이용 시라도 사전답사 실시(학부모 동행 권장)
-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간소화(업체부담 경감)
- ◆ 수학여행 · 수련활동 평가 설문지 구분 및 명확화
- ◆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학교생활안전지원과-6684, 2013. 4. 3.)

- 급식시설 이용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지자체 위생점검에 위생점검결과 조회(위생 미점검 시설일 경우 사전 위생점검 요청)

(※ 연수구 관내 중학교 수련활동 중 식중독의심환자 발생)

- 음식물배상책임 관련 보험 가입 및 보상가능여부 확인 철저
- 집단급식소 미신고 수련시설 및 체험학습자 이용 금지
- 지하수 사용시설 이용 시 살균 · 소독 등 수질검사 여부 확인 철저
- 수련장소 이동 시 소규모 음식점 및 도시락 대량주문 자제
- 전세버스 대열운행 금지 및 차량안전점검 실시
- 현장학습차량의 과도한 연식제한 금지
-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여부 등 조회(교통안전공단)

※ 2013. 4. 15. 이후 운전자 적격여부 및 차량 교통안전정보 별도 회신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우수시설 이용
- 학생수송버스 에스코트 및 음주측정 요청(관할경찰서)

- 각종 사고 발생 시 사안보고 철저(2013년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참조)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 ※ 현장학습 활동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 시행
  - ◆ 특정시기(9~10월, 행락철) 및 출근시간대, 특정지역(고적지, 명승지, 관광지 등) 집중 지양
  -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 학생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학교 예산 수립 및 지원 요망
  - ◆ 단순 관광성 여행 지양
    - 내고장 역사체험활동, 지자체 행사나 축제 등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 추진
    -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관광산업 육성 목적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교원 대상 사전답사(팸투어) 시 교통 · 숙박 등 편의제공 수수 금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향응”에 해당됨)
- 현장학습 실시 절차(2013년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참조)

단계	운영 실무		비고
	기본	기타	
계획	1) 매 학년 초 학생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 보호자 및 잔류학생 지도계획(필수내용 포함)</li> </ul> 2) 학부모 동의 · 선호도 조사( <b>의무사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여부 및 활동장소(지역) 등</li> </ul> 3) 수학여행 ·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심의(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서 부장을 중심으로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 운영</li> </ul> 4) 현장답사( <b>의무사항</b> ) ►[부록 서식1] p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체 및 관계자 관련 향응 절대 금지</li> </ul>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b>의무사항</b> )           6) 계약 담당자 확인 및 계약           7) 경비 책정 및 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수학여행 · 수련활동 경비 정수</li> </ul> 8) 인솔교직원 여비 지급           9) 사전교육 실시 ►[부록 1] p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 학교폭력 및 성희롱 등 예방교육(<b>의무사항</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소규모 활동이 되도록 함</li> <li>○ 계약 시 구비서류 반드시 확인</li> </ul>	

실시	<p>1) 학교계획에 의한 사제동행 실시(의무사항) ※ 학교자체 프로그램 실시(권장사항)</p> <p>2) 교통편 연계(권장사항)</p> <p><b>3) 요 보호자 명단 파악 및 지도(의무사항)</b></p> <p>4) 생활지도 및 안전 지도 강화 -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서에 반영</p> <p>5) 전류학생 처리 지도(의무사항)</p>	
정리	<p>1) 학생 수학여행·수련활동 경비 정산 및 공개 -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입금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p> <p><b>▶[부록 서식8] p129.(의무사항)</b></p> <p>2) 활동 평가 및 결과 반영(의무사항) - 평가 매뉴얼을 통한 교사, 학생 대상 설문조사</p> <p><b>▶[부록 서식3] p118.</b> -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및 가정통신문 발송</p> <p><b>※ 활동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정산 후 10일 이내 공개</b></p>	

## □ 교복 공동구매 추진 절차

(심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li> <li>- 교복 구매 선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안 제출</li> </ul>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입방법 등 교복 선정방법에 대하여 심의</li> <li>- 색상·모양·재질 등의 적정 여부를 심의</li> </ul>
(심의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li> <li>- 교복 공동구매 결정에 따른 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복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나 안내장 발송 및 계약관련 모든 서류는 학교장 명의로 추진</li> </ul> </li> </ul>

## □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 교복 공동구매 적극 추진 - 학운위 심의 필수 사항
- 교복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되 가정통신문발송 및 업체계약은 학교장 명의로 체결
- 하복 공동구매 적극 참여 요망

- 교복나눔운동(교복물려주기) 활성화
  - 학부모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
  - 학생참여 독려(지방자치단체 교복나눔운동 참여 활성화)
    - 교복보관공간 확보, 세탁 및 수선예산 편성 등
  -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제정 예정(2013. 7월경)
- 교복 디자인 변경 시 유의사항
  - 학생, 학부모, 교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실시(학칙 개정절차 준수)
  - 변경된 교복 착용 최소 1년 전 학교 홈페이지와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사전예고(공고)
    - 예시: 2014년 하복 디자인 변경 시 2013년 4~5월 공고
  - 교복업체 통보(전화, 구두, 공문 등 적극 활용)
  - 부득이 사전예고를 충분히 실시하지 못한 경우(최소 6개월 보장) 1년간은 변경된 교복과 이전교복 혼용토록 유예기간 지정
  - 디자인 변경 시 기존 교복 활용방안 적극 모색

## 2

## 201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실시

- 학생 생명존중교육(학기별 1회 이상 반드시 교육 실시)
  - 훈화 교육 : 전체 조회 시 학교장 훈화 교육
  - 담임 교육 : 조·종례 시간 활용 수시로 교육
  - 특강 교육 : 초청 강사 교육 등
  - 교과 교육 : 교육과정 상 생명존중 내용 관련 교과 교육
  - 행사 교육 : 체험 학습이나 단체 활동 시 안전교육과 더불어 생명존중 교육 및 자살예방 교육 병행 실시

※ 2013년부터 가정통신문 발송은 교육 실시로 인정 안함(담당자 연수시 기 전달, '13.4월)

## □ 가정과의 연계 지도

- 학부모에게 서한문 보내기 등 가정지도 방안 수립  
(자살 징후 조기발견 및 자녀와의 대화 갖기 가정통신문 발송)

## □ 학교 홈페이지 자료 탑재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자료 홈페이지에 탑재

## □ 자살 사안 발생시

-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즉시 교육청에 전화보고 후 팩스로 사안보고

- ♦ 유서(낙서장, 쪽지, e-mail 등) 유무
- ♦ 경찰 소견(자·타살 여부) 최대한 확보
- ♦ 자살 원인 확인(유가족이 원치 않으면 즉시 중지)
- ♦ 학부모의 의견(학교 측 또는 관련자에게 요구하는 사항 등) 확인
- ♦ 최대한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행동하여 사안처리  
(필요시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에 근거 최대한 물적 지원, 증빙자료 보관)
- ♦ 학교에서는 상담기록 등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정리  
(모든 내용은 숨김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
- ♦ 동정 및 모방자살 등의 방지를 위해 주변 학생에 대한 지도상담 및 세심한 관심과 배려
- ♦ 자살 사고 발생 시 학생들에게 조문 강요하지 않도록 할 것  
(조문학생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 필요)

- ☞ 교육지원청청 담당 장학사

- ☞ 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 담당 장학사(☎ 420-8266)

3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

### ■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 어떤 제도 인가요?

## □ 제도개요

-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학교안전공제회)이 우선 지원한 후

##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게 됨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간의 또 다른 분쟁이 되는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I 누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권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 신청시기
  - 학생이 다쳤다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임
  - 따라서, 학생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임. 다만, 치료비가 너무 커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도 신청할 수도 있음
- 청구방법
  - 제출서류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 제출
    -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4호(6하 원칙 작성)에 따라 작성하고, 병원 치료비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기관
    - 학교장이 신청할 때 : 학교의 학교안전공제 전산시스템으로
    - 학생 · 보호자 신청 할 때 :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접수, 우편, 모사전송(Fax) 가능

## I 모든 심리상담이나 치료비 모두 지원되나요?

-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 심리상담 등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p30)
    - ※ 우선적으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도록 조치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p30)
  - 치료 등 기관 : 「의료법」의 모든 의료기관,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국 등

□ 치료비 지원이 인정되는 치료기간

○ 상담 및 치료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 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일시보호 기간 : 30일

□ 적용시기(법률 시행전 사고)

○ 적용시기 : 언제 학교폭력사고가 발생했던지 2013년 4월 1일 현재 치료중인 학생은 모두 해당됨

○ 적용시점 : 지원되는 기간은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어 치료를 받게 된 최초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과거 치료를 받은 기간과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정

□ 비용 지급 절차



※ 처리기한 : 통상 14일 이내(조사 시 연장될 수 있음)

## ■ 2013년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치료지원 기관 현황

순번	병원명	연락처	지원내용
1	고정선신경정신과	032-777-1182	소아청소년 심리치료 · 심층상담
2	나은병원	032-584-0114	
3	라온정신건강의학과	032-831-8907	
4	새희망병원	032-431-2555	
5	세림병원	032-509-5599	
6	연세정신과	032-555-8809	
7	원신경정신과	032-547-7114	
8	인천기독병원	032-270-8252	
9	인천바오로병원	032-525-7080	
10	임태식신경정신과	032-554-5511	
11	조은정신과	032-564-7505	
12	차지현신경정신과	032-821-2001	
13	홍정신과	032-865-1986	
14	공감미술치료센터	032-236-7179	미술치료 및 상담
15	김선인천아동발달센터	032-473-0075	심리발달프로그램 및 상담
16	나우리아동발달센터	032-522-2700	
17	다솜누리아동발달센터	070-7767-0357	
18	드림아동발달센터	032-766-7811	
19	이은희아동발달센터	032-554-7098	
20	이화누리아동발달센터	032-437-0030	
21	인천아동발달심리운동센터	032-816-0075	언어치료 및 심리상담
22	김숙자언어인지클리닉	032-263-5842	
23	나무와숲심리언어발달센터	032-471-8548	
24	라파언어심리치료센터	032-567-7756	
25	이솔언어심리발달센터	032-552-7220	
26	하늘소리언어치료센터	032-527-8383	

27	밝은마음아동청소년상담센터	032-263-4158	
28	아이맘 아동상담센터	032-541-2718	
29	아이봄센터(계양점)	1588-1231	
30	아이봄센터(부평점)	1588-1231	
31	연세아동청소년상담센터	032-555-8840	
32	조우경아동상담센터	032-248-6828	
33	마음愛심리상담치료센터	032-518-8088	
34	인천논현가족상담센터	032-428-2469	
35	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032-851-3361	가족사정 및 가족상담 뇌파 검사 및 훈련, 상담
36	인천참사랑병원	032-571-9111	
37	나사렛국제병원	032-899-9961	
38	황원준신경정신과	032-883-5000	
39	해솔마음클리닉	032-814-8881	
40	강화정신보건센터	032-930-4077	
41	두드림정신과의원	032-325-8262	
42	미소진정신과의원	032-328-7533	
43	백상신경정신과	02-2696-0913	
44	부평바오로병원	032-525-7080	
45	이보연가족상담센터	02-250-5275	
46	정건연세정신과의원	032-526-1900	
47	한아름상담센터	070-8810-7125	
48	마음친구도래미센터	032-883-5000	
49	한신플러스케어	1688-3551	
50	서울신경정신과의원	032-433-5335	심리상담지원 사회성증진프로그램, 놀이 치료
51	고은산부인과	032-883-3536	성상담 및 치료지원
52	국제아동발달클리닉	032-564-7774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 심리평가
53	소중한 아이 클리닉	032-328-0888	
54	해수아동발달연구소	032-326-3555	심리검사, 심리치료, 감각통합
55	HUGMOM(허그맘)	032-821-9200	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2.3.30>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앞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 등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 공제회 이사장 귀하

청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공제가입자	위임인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공제자	학교명				
	학교장				
	주소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 지에 적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관련자 소속	성명				
사고경위 및 내용					
청구액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합계				
구비서류	뒷면 참조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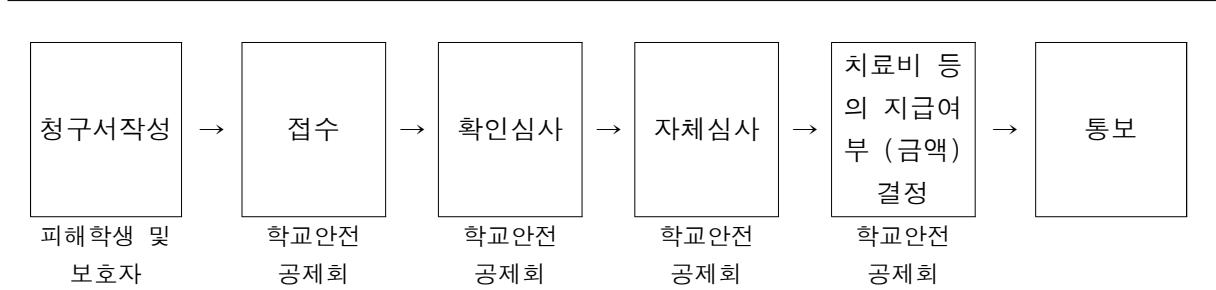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일시보호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2.3.30>

##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앞쪽)

피해자	사건번호				보고일자				
	학교명				학년반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도교사		작성자			작성자연락처				
가해자	학교명	학년반	성명	보호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업	주소	전화번호
사고내용	사고일자		부상부위						
	사고시간		부상정도			전치 ( )주			
	사고장소		사고 의도성			여[ ] 부[ ]			
	진단명								
	신고기관		교육청[ ]	경찰서[ ]	학교폭력관련기관[ ]	기타[ ]			
사고개요									
사고 후 학교 지도내용 및 조치사항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 긴급조치 사항	해당여부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 학교장 긴급조치사항
	개최일시	
	조치사항	
치료 조치 및 계획	치료상황	[ ] 미치료 [ ] 치료중 [ ] 치료완료
	치료기관	[ ] 학교폭력관련기관 [ ] 민간단체 [ ] 병원
	조치사항	[ ] 심리상담 [ ] 일시보호 [ ] 병원치료
가해 학생 생활환경	기초생활수급자	[ ] 예 [ ] 아니오
	한부모 가정	[ ] 예 [ ] 아니오
	기타①	[ ] 예 [ ] 아니오
	기타②	[ ] 예 [ ] 아니오
	기타③	[ ] 예 [ ] 아니오
	추가사항	
가해 학생 보험가입 여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 가입 [ ] 미가입
	보험사고접수번호	
	보험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진행상황	
기타사항		

개요

○(목적) 학업중단 예방 및 중단 이후 진로지도

○(운영 주체) 학교장

○(숙려 대상) 자퇴 정후를 보이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고교생

※ 제외대상 : 질병 · 유학 · 퇴학생 ※ 검정고시 응시생은 시기를 고려하여 적정히 판단

○(상담 기관) Wee 클래스 ·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에서 선택)

 세부 운영 계획

○(숙려 기간) 2주(14일)

○(상담 거부시 조치)

- 장기 무단 결석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숙려제 적용을 위한 연락 시도 노력

○(숙려 기간 종료 후 조치)

- 학교 복귀 : 숙려 기간 출석으로 인정 및 지속적인 학교 내 상담 지도

- 학업 중단 : 숙려 기간 결석 처리,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

○(상담 기관) Wee 센터

Wee 센터	담당 학교	사무실	비고
본청	- 중구 · 옹진군 관내 고등학교(19교)	432-7177	동부 지원
남부	- 남구 · 동구 관내 고등학교(21교)	764-7179	
북부	- 부평구 관내 고등학교(20교)	510-1525	서부 지원
동부	- 연수구 · 남동구 관내 고등학교(30교)	460-6371	
서부	- 계양구 · 서구 관내 고등학교(27교)	555-7179	
강화	- 강화군 관내 고등학교(8교)	930-7822	

○(상담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담당 자치구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구 · 남구 일부	김은혜 팀장	721-2326	721-2320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계양구	윤은지	547-0856	547-0857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구	주창호	862-8751~2	862-8753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	김수민	777-1388~9	766-1387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평구	서화	509-8916	509-8917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	양상모	584-1388	584-1389
연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구	장희순	818-7308	818-1760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동구	최성용	469-7194	469-7196

## 5

##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 · 학부모 지원 방안

### 【피해학생 · 학부모 지원】

#### □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 보호조치 · 상담 · 교육 지원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심층 지원 및 문제해결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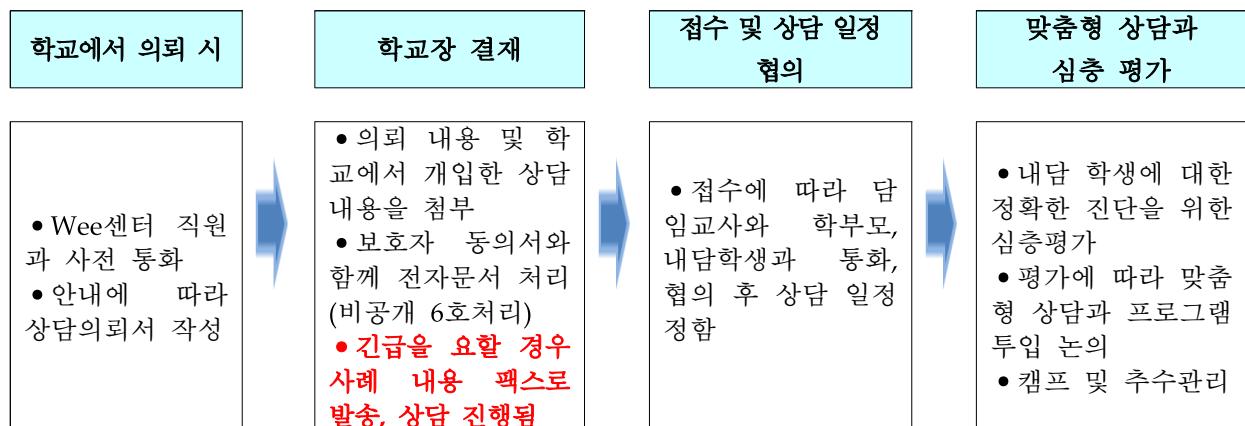
□ 운영 기간 : 2013. 03. 01 ~ 2014. 02. 28

□ 운영 시간 : 월~금(평일) 09:00 ~ 18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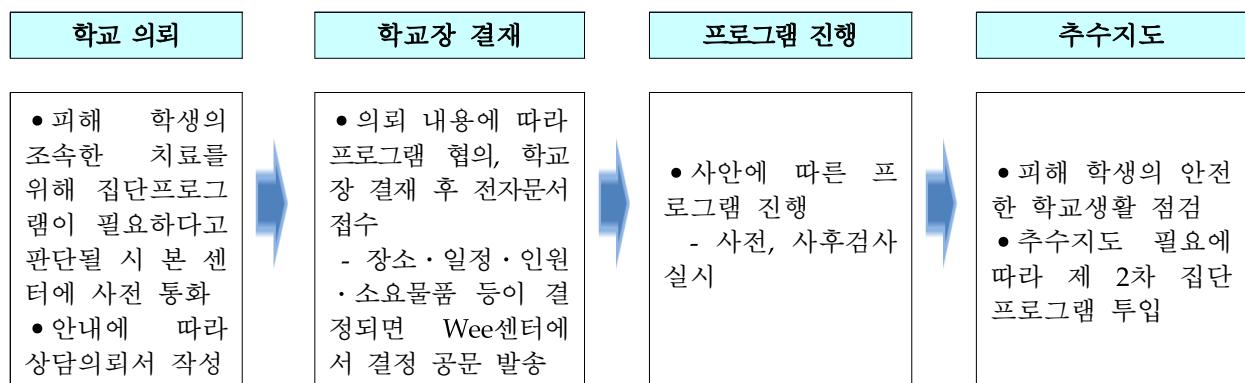
□ 운영 장소 : 인천시교육청 Wee센터(남동구 구월동 1089번지)

□ 피해 지원 의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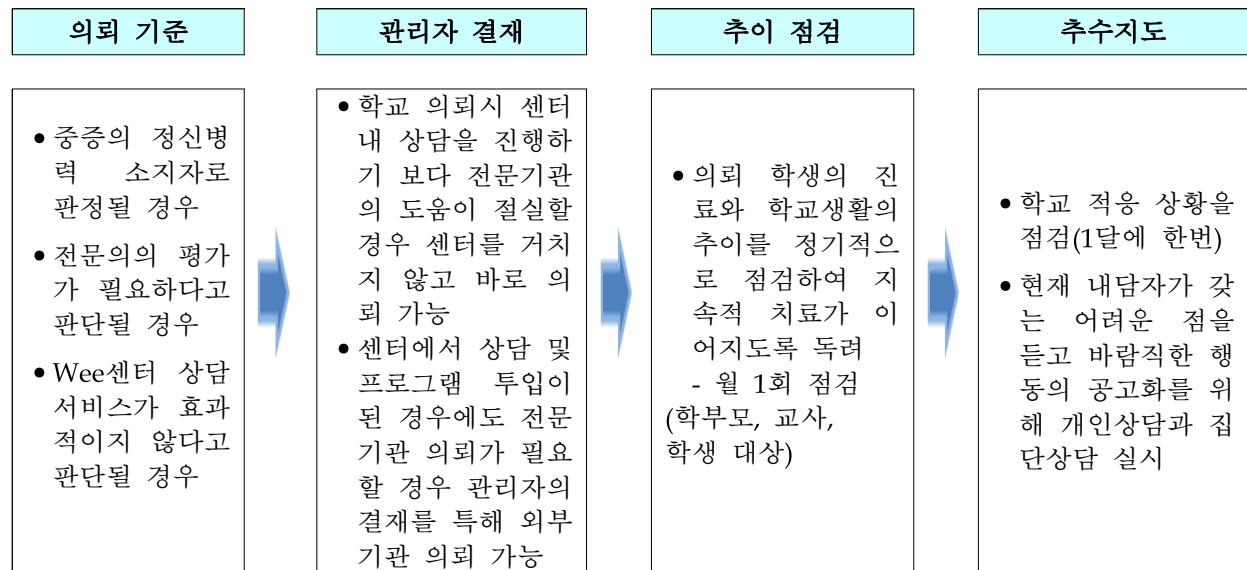
#### ○ 상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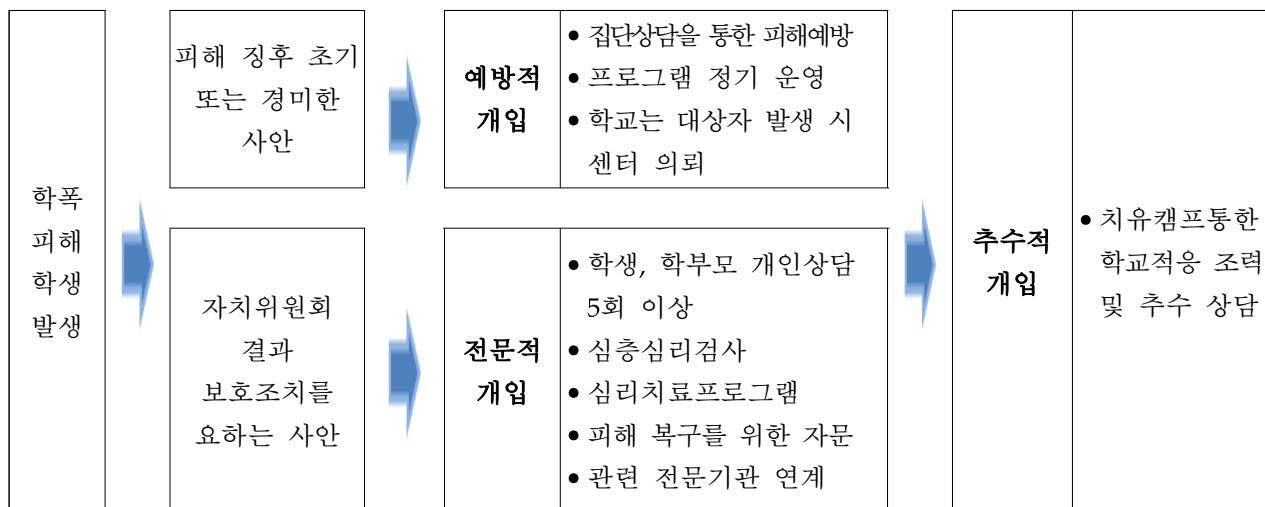
#### ○ 프로그램 영역



## ○ 외부기관 의뢰



## □ 사안에 따른 피해 지원프로그램



## □ 피해 지원 상담 전화

- 상담 및 업무 전화 : 032) 432-7176~9
- 전자문서 접수 요함(기 공문으로 안내)
- 기타 긴급을 요할 경우 의뢰 학생 관련 자료는 Fax(032) 432-7180

## 【피해 · 가해학생 · 학부모 지원 기관】

### □ 가해학생 특별 교육 기준

교육 대상 처분	이수 시간	이수 방법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5시간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주관 학생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5시간) 이수 - 시기 : 매주 금요일 오후	- 가해학생 조치와 특별 교육 병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 장소 : 인천평생학습관 ※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 기관에서 잔여 시간 이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9항
특별교육	4~5일	- 해피스쿨,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성교육센터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두드림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5번(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 기준

교육 대상 처분	이수 시간	이수 방법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5시간	<input type="checkbox"/> 시교육청 주관 학생 · 학부모 공동 교육 프로그램(5시간) 이수 - 시기 : 매주 금요일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이상	- 장소 : 인천평생학습관 ※ 5시간 이상 교육대상자는 시교육청 주관 프로그램 이수 후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 기관에서 잔여 시간 이수	

### □ 피해학생 · 학부모 지원

교육 대상	이수 방법	비고
학생 · 학부모	- 교육감 지정기관 특별교육이수	

### □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이수 기관

구분	이수 기관	비고
학교	- 특별교육이 가능한 시설 확보, 전문인력 배치, 특별교육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특별교육기관으로 인정한 학교	144교
Wee센터	- 본청,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Wee센터, 가정형Wee센터	7개 센터
인천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두드림존), - 자치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부평구, 동구, 계양구, 남구, 연수구, 서구)	7개 센터
교육청	- 인천 해피스쿨,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장 · 단기 대안교육위탁기관	36기관
기타	- 종교계 : 불교 · 기독교 · 천주교 1기관씩 운영	예정

## 학교폭력 사안 나이스 입력 방법

### □ 학교폭력 사안 나이스(NEIS) 입력

- 입력대상 : 학교폭력 사안 발생건
- 입력시기 : 학교폭력 사안 처리후 수시로 추가 입력

### □ 나이스 입력 및 마감 절차 요령

#### I. 선결조건 : 업무담당자(예, 정보부장 → 학생부장)에게 주어야 할 업무

- ※ 나이스 : 학교 마스터 권한으로 나이스에서 장학업무의 페이지 권한 부여.
  - 업무포탈→ 나이스→시스템관리→개인별권한등록→학교행정→장학
  - “장학통계”를 체크하고 저장



#### II. 나이스(neis)에서의 입력 절차

##### 1. 나이스 장학 초기화면 → 업무현황 및 통계



## 2. 학교폭력 관리(초등은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 3. 학교폭력 사건 등록 화면

※ 2013년도 학교폭력 사건은 학년도를 확인 후 등록해야 함

## 4. 학교폭력 관련 내용 입력하고 저장

학교폭력사건 발생현황 등록(고)

담당자: 연락처: 061-352-4320  
사건발생일시: 2011.03.15 (11) 시 (11) 분  
학년도: 2011 학기: 1  
신고일자: 2011.03.22  
신고처: 신고처  
교내: 교실 (선택) 복도 (선택) 과학실 (선택) 음악실 (선택) 미술실 (선택)  
교외: 컴퓨터실 (선택) 체육관/강당 (선택) 화강실 (선택) 운동장 (선택)  
교내: 식당 (선택) 기타 (선택) PC게임방 (선택) 노래방 (선택) 학교주변 (선택) 동네골목 (선택) 지하도 (선택)  
교외: 상가 (선택) 공원 (선택) 아산 (선택) 학교주변 (선택) 기타 (선택)  
사건점수경위: 일반학생상고  
사건유형: 폭행  
증거자소유형: 없음 (선택) 카메라 (선택) 봉동이 (선택) 기타 (선택)  
관련학교: 학교찾기  
생활지도인력: 없음 (선택) 기타 (선택)

(예) A학교에서 입력을 할 경우 관련학교가 B학교인 경우

A학교에서 관련학교 찾기에서 B학교 등록

(관련학교가 여러 학교인 경우 주무학교의 조율이 필요함.)

A학교에서 관련 학교를 등록해야만 B학교에서 사건 열람이 가능함.

(피해학생만 있는 학교에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입력한 후 마

감조치해야 함)

## 5. 학교폭력 사건 저장후 나타나는 화면

학교폭력사건현황(중)

학년도: 2011 학기: 학기  
기간: 조회  
상태: 전체  
마감현황: 생활지도인력  
마감일: 등록

번호	학기	사건명	사고발생일	사고장소	사고유형	관련학교	대책자처위원회	마감일
1	학기	집단 폭행 사건	11.03.14	교실	폭행	0(개)	[준비] 0회	-

##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생성화면

경영지원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PAPS 학생/학부모서비스 보건 방과후학교 장학 학교정보공시

기본메뉴 업무메뉴

장학/업무통계및현황

학교폭력사건현황(중)

2011년 03월 22일 13시 26분

학교폭력사건 기본정보

사건명	집단 폭행 사건		
사건발생일시	2011.03.14 13:20:00	사건발생장소	교실
사건신고일	2011.03.14	사건접수처	
사건접수경위	일반학생신고	사건유형	폭행
홍기소지유형	없음	관련학교	0개
위원회활동	0(회)	마감상태	
사건내용	점심시간 교실에서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수정 생성 삭제

개최일시 2011.03.21 15 시 30 분 종료일시 2011.03.21 16 시 40 분 완료여부 완료 미완료

내용

※ 개최일시, 종료일시를 먼저 입력한 후 생성버튼 클릭 후 내용 입력

## 7.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생성 후 나타나는 화면

경영지원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PAPS 학생/학부모서비스 보건 방과후학교 장학 학교정보공시

기본메뉴 업무메뉴

장학/업무통계및현황

학교폭력사건현황(중)

2011년 03월 22일 13시 26분

학교폭력사건 기본정보

사건명	집단 폭행 사건		
사건발생일시	2011.03.14 13:20:00	사건발생장소	교실
사건신고일	2011.03.14	사건접수처	
사건접수경위	일반학생신고	사건유형	폭행
홍기소지유형	없음	관련학교	0개
위원회활동	1(회)	마감상태	
사건내용	점심시간 교실에서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차]

수정 생성 삭제

개최일시 2011.03.24 15 시 30 분 종료일시 2011.03.24 16 시 40 분 완료여부 완료 미완료

내용 3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 8. 제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생성 후 나타나는 화면

경영지원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PAPS 학생/학부모서비스 보건 방과후학교 장학 학교정보공시

기본메뉴 업무메뉴

장학/업무통계및현황

학교폭력사건현황(중)

2011년 03월 22일 13시 26분

학교폭력사건 기본정보

사건명	집단 폭행 사건		
사건발생일시	2011.03.14 13:20:00	사건발생장소	교실
사건신고일	2011.03.14	사건접수처	
사건접수경위	일반학생신고	사건유형	폭행
홍기소지유형	없음	관련학교	0개
위원회활동	2(회)	마감상태	
사건내용	점심시간 교실에서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차] 1차

수정 생성 삭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한 경우(3회 이상도 생성버튼만 누르면 됨)

## 9. 가해학생 정보 입력 화면(조치사항은 여러개 입력 가능함)

학교폭력사건현황(중)

2011년 03월 22일 13시 26분

사건명: 집단 폭행 사건

사건발생일시: 2011.03.14 13:20:00

사건발생장소: 교실

사건신고일: 2011.03.14

사건접수처:

사건접수경위: 일반학생신고

사건유형: 폭행

흉기소지유형: 없음

관련학교: 0개

위원회활동: 2회

마감상태:

사건내용: 점심시간 교실에서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차] [1차]

개최일시: 2011.03.24 15 시 30 분 종료일시: 2011.03.24 16 시 40 분 완료여부: 완료 미완료

내용: 3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가해자학생정보

3명 추가 학년, 성별 등을 선택하면 항목별 일괄적용 모든 항목 일괄적용

저장 삭제

학년: 첫 번째 학년 선택

성별: 첫 번째 성별 선택

결석일수: 첫 번째 결석일수 선택

이전 폭력 수: 첫 번째 이전 폭력 수 선택

가해: 첫 번째 가해 선택

피해: 첫 번째 피해 선택

폭력서를 가입: 첫 번째 폭력서를 가입 선택

가해자 특징: 첫 번째 가해자 특징 선택

조치사항: 첫 번째 조치사항 선택

※ 본교 학생만 입력함(가해학생, 피해학생), 관련학교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 10. 가해학생 정보 입력 후 저장

학교폭력사건현황(중)

2011년 03월 22일 13시 26분

사건발생일시: 2011.03.14 13:20:00

사건발생장소: 교실

사건신고일: 2011.03.14

사건접수처:

사건접수경위: 일반학생신고

사건유형: 폭행

흉기소지유형: 없음

관련학교: 0개

위원회활동: 2회

마감상태:

사건내용: 점심시간 교실에서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차] [1차]

개최일시: 2011.03.24 15 시 30 분 종료일시: 2011.03.24 16 시 40 분 완료여부: 완료 미완료

내용: 3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가해자학생정보

3명 추가 학년, 성별 등을 선택하면 항목별 일괄적용 모든 항목 일괄적용

저장 삭제

학년: 첫 번째 학년 선택

성별: 첫 번째 성별 선택

결석일수: 첫 번째 결석일수 선택

이전 폭력 수: 첫 번째 이전 폭력 수 선택

가해: 첫 번째 가해 선택

피해: 첫 번째 피해 선택

폭력서를 가입: 첫 번째 폭력서를 가입 선택

가해자 특징: 첫 번째 가해자 특징 선택

조치사항: 첫 번째 조치사항 선택

입력 후 저장

※ 가해학생에 대한 입력내용일 동일할 경우 [모든 항목 일괄적용]

## 11. 피해학생 정보 입력 후 저장

경영지원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PAPS 학생/학부모서비스 보건 방과후학교 **장학** 학교정보공시

기본메뉴 업무메뉴

장학/업무통계및현황

학교폭력사건현황(종)

2011년 03월 22일 13시 26분

도움말 | 인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차] [1차]

개최일시 2011.03.24 15 시 30 분 종료일시 2011.03.24 16 시 40 분 완료여부 완료 미완료

내용 3명의 학생이 교실에서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수정 생성 삭제

가해자학생정보

3명 추가 학년, 성별, 결석일수 미전폭력수 폭력서를가입 가해자징정 조치사항 기타사항

기해 미전 폭력

2 남 3 3 1 가입 신체적미상 (1)개 조치

2 남 1 0 0 미가입 정상 (1)개 조치

2 남 0 1 1 미가입 기타 (1)개 조치

저장 삭제

피해자학생정보

1명 추가 학년, 성별 등을 선택하면 항목별 일괄적용됩니다. 모든항목일괄적용

미전폭력수

저장 삭제

**입력 후 저장**

저장 삭제

※ 피해학생에 대한 입력내용일 동일할 경우 [모든항목일괄적용]

## 12. 마감처리 화면(마감 후 마감취소하고 사건을 수정·삭제할 수 있으므로 연습이 가능함)

경영지원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PAPS 학생/학부모서비스 보건 방과후학교 **장학** 학교정보공시

기본메뉴 업무메뉴

장학/업무통계및현황

학교폭력사건현황(종)

2011년 03월 22일 13시 26분

도움말 | 인쇄

\* 마감할 내용을 본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신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사건 기본정보

이전 마감

사건명 집단 폭행 사건

사건발생일시 2011.03.14 13:20:00 사건발생장소 교실

사건신고일 2011.03.14 사건접수처 사건접수처

사건접수경위 일반학생 신고 사건유형 폭행

출기소지유형 없음 관련학교 0(개)

위원회활동 2(회) 마감상태 마감

사건내용 짐짓시간 교실에서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음

관련학교

번호 관련학교 마감 마감일

## 13. 기타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입력해야 함
- 2) 학교폭력사건이 등록·마감되면 지역청(초·중), 시교육청에서 통계·조회가 가능함.
- 3) 초·중·고 입력 과정이 유사하며, 절차대로 입력하면 됨

사업 개요

-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자치단체, 일반개인, 일반단체
- 사업내용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 학교, 지방자치단체, 개인, 일반단체 등 총 4개 부문으로 우수사례 발굴, 전국적 확산
    - 학교부문 : 5개 영역(예방활동, 상담·인성교육, 자치활동, 학교안전, 기타)
    - 자치단체 부문 : 2개 영역(학교폭력, 학교안전)
  - 선정된 단체에게 교육부장관 표창 및 100만원의 상금 수여, 개인에게 교육부장관 표창 및 50만원의 상금 수여
  - 선정된 우수사례는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 및 e-러닝 콘텐츠 등으로 제작·확산

신청 및 접수기간 : '13.5.7.1(월)~13.7.19(금)' 12:00 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stopbullying@korea.kr](mailto:stopbullying@korea.kr))로 제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A4 20매 이내
- 참고자료 : 사진, 동영상, 웹페이지 링크, PPT 등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참고자료를 메일로 함께 제출
  - \* 참고자료가 50MB 이상일 경우, 자료를 CD로 레코딩하여 우편 제출

\* 우편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8 KCC웰츠밸리 603호 나눔사업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우수사례 공모전" 담당자 앞

※ 문의처 : 070-7165-1052, 070-7165-1043(청예단 나눔사업부)

## 8

#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정책발굴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안내

- 주제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우수사례·정책 발굴 상시 모니터링』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학부모 등
- 내용 : 우수사례, 정책제안 등
  - 우수사례 :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stopbullying.or.kr) '학교뉴스'에 탑재된 학교 폭력예방 사례 중 「상시평가단」을 활용하여 매월 우수사례 발굴※ 발굴된 우수사례는 리플렛, 인쇄물, 동영상자료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
  - 정책제안 :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stopbullying.or.kr) '정책제안'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발굴
- 입력방법
  - 우수사례 : 시교육청(공보담당관실)에서 공감코리아(moe.korea.kr)>현장클릭>'학교는지금'에 탑재된 우수사례와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stopbullying.or.kr)>'학교뉴스'와 연계
  - 정책제안 : 학부모·교원·학생 등 일반 국민이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stopbullying.or.kr)>'참여제안'>'정책제안'에 직접 게시
- 심사일정
  - 우수사례 모집 · 접수  
(매월 1주 ~ 매월 3주) → 우수사례 심사 · 현장 모니터링  
(매월 4주 ~ 익월 1주) - 동영상자료 제작 · 심사결과 발표  
(익월 2주)
- ※ 학교폭력예방 포털사이트 '이달의 우수사례'에 심사결과 발표(매월 15일)
- ※ 문의처 : 070-7165-1052, 070-7165-1043(청예단 나눔사업부)
- 행정사항
  - 학교에서는 '공감코리아>현장클릭>학교는지금'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우수사례가 탑재(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담당자가 탑재)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보도자료 등에 기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 1. 학업중단 비율

평가목적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예방

◆ '13.4월 기준 학업중단학생 통계조사 항목을 개선 → 지표반영

- 질병, 해외출국, 특수교육대상자(유예·면제)는 제외
- 가사, 부적응(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기타(자발적 학업중단), 품행(학교폭력, 학칙에 의한 징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

◆ 학업중단학생 비율 향상도는 삭제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결과 반영

- 학업중단숙려대상자 중 학업중단숙려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비율(30%)
- 학업중단숙려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중 학업계속 학생수 비율(30%)

## □ 측정산식

$$\textcircled{1} \text{ 학업중단 비율(40\%)} : \frac{\text{학업중단 학생 수(고)}}{\text{전체 학생 수(고)}} \times 100$$

※ 학업중단 학생 수(고)에 질병, 해외출국, 특수교육대상자(유예·면제)는 제외하고, 가사, 부적응(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기타(조기진학 등), 품행(학교폭력, 학칙 위반)은 포함

$$\textcircled{2} \text{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수 (30\%)} :$$

$$\frac{2013\text{년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2013\text{년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 수}} \times 100$$

※ 학업중단숙려제 대상학생수 : 자퇴 징후(무단결석5일이상)를 보이거나 자퇴원서를 제출한 고교생

※ 학업중단숙려제 제외 대상학생 :

- 즉시 자퇴를 요구하여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학생
- 질병, 유학, 평생교육시설 및 방송통신고 편입학을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

③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 중 학업계속학생 비율 (30%) :

$$\frac{2013\text{년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 중 학업계속학생수}}{2013\text{년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수}} \times 100$$

※ 숙려제 프로그램 :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Wee 클래스, Wee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통해 제공한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부모상담 등(담임 교사에 의한 면담은 제외함)

□ 자료출처 및 기준

- 전체 학생 수 : 2012, 2013년 교육통계연보("12.4.1, '13.4.1 기준)
- 학업중단 학생 수 : 2012, 2013년 교육통계연보(교육부 소관부서 자료)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결과 : 2013년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 평가서식

구분	2013년			비고
① '13년 학업중단학생 비율	학업중단학생 수(A)	전체학생 수(B)	비율 $C=(A/B) \times 100$	
② '13년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수 비율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수 (A)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수 (B)	비율 $C=(A/B) \times 100$	
③ '13년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 중 학업계속 학생수 비율	프로그램 참여학생중 학업계속 학생 수 (A)	숙려제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B)	비율 $C=(A/B) \times 100$	

□ 평가방법 : 상대평가

□ 평정척도 및 점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3년 학업중단학생 비율	1.2점	1.0점	0.8점	0.6점	0.4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수 비율	0.9점	0.7점	0.5점	0.3점	0.1점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학생 중 학업계속학생수비율	0.9점	0.7점	0.5점	0.3점	0.1점

## 2.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평가목적

단위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 측정산식

- ① 학교폭력 예방교육(학생) 현황 :  $\frac{\text{학급당 2014년 평균 예방교육(정규교과) 시간수(분)}}{\text{학급당 2014년 교육과정 운영 전체 평균 시간수(분)}} \times 100 \times 0.6 + \frac{\text{학급당 2014년 평균 예방교육(정규교과 외) 시간수(분)}}{\text{학급당 2014년 정규교과 외 운영 전체 평균 시간수(분)}} \times 100 \times 0.4$
- ②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원) 현황 :  $\frac{\text{학교당 2014년 학교폭력 예방 교원연수 운영 횟수}}{\text{학교당 2014년 전체 교원연수 운영 횟수}} \times 100$
- ③ 학교폭력 예방교육(학부모) 현황 :  $\frac{\text{학교당 2014년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운영 횟수}}{\text{학교당 2014년 전체 학부모교육 운영 횟수}} \times 100$

### □ 자료출처 및 기준

- 예방교육 현황(교육부 소관자료, 교육청 보고자료), 2013년 교육통계연보

### □ 평가서식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생\*) 현황(1점)

학교급	정규교과** 예방교육			정규교과 외 예방교육***			합계(%) [G=C×0.6 + F×0.4]
	학급당 교육과정 운영 전체 평균시간 (A)	학급당 평균 예방교육 시간(B)	비율 (%) [C=(B/A)× 100]	학급당 정규교과외 운영 전체 평균시간 (D)	학급당 평균 예방교육 시간(E)	비율 (%) [F=(E/D) ×100]	
초							
중							
고							
합 계							

○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원\*) 현황(0.5점)

학교급	학교당 전체 교원연수 운영횟수(A)	학교당 학교폭력 예방 교원연수 운영횟수(B)	비율(%) [C=(B/A)×100]
초			
중			
고			
합 계			

○ 학교폭력 예방교육(학부모\*) 현황(0.5점)

학교급	학교당 전체 학부모교육 운영횟수(A)	학교당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운영횟수(B)	비율(%) [C=(B/A)×100]
초			
중			
고			
합 계			

□ 평가방법 : 절대평가 (향상도 : 상대평가)

□ 평정척도 및 점수

① 학교폭력 예방교육(학생)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학생 예방교육 (1점)	배점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기준	90% 이상	80~89%	70~79%	60~69%	60% 미만

②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직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교직원 연수 (0.5점)	배점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기준	90% 이상	80~89%	70~79%	60~69%	60% 미만

③ 학교폭력 예방교육(학부모)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학부모교육 (0.5점)	배점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기준	90% 이상	80~89%	70~79%	60~69%	60% 미만

### 3. 또래조정 · 상담, 학생자치법정 운영 활성화

#### 평가목적

학생 스스로 갈등해결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확대

#### □ 주요 평가내용

- 또래조정 · 상담, 자치법정 운영 · 지원 현황
- 시도교육청 · 학교단위의 자치활동 운영 현황

#### □ 평가방법(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 절대평가

#### □ 측정산식

- 또래조정 · 상담, 자치법정 운영교 비율

$$= \{(자치법정 운영학교 비율) + (또래조정 운영학교 비율) + (또래상담 운영비율)\}/3$$

$$* \text{자치법정 운영학교 비율} = \frac{2013\text{년 자치법정 운영 학교수}}{2013\text{년 전체학교수}} \times 100$$

$$* \text{또래조정 운영학교 비율} = \frac{2013\text{년 또래조정 운영 학교수}}{2013\text{년 전체학교수}} \times 100$$

$$* \text{또래상담 운영학교 비율} = \frac{2013\text{년 또래상담 운영 학교수}}{2013\text{년 전체학교수}} \times 100$$

#### □ 평정척도 및 점수

- 또래조정 · 상담, 자치법정 운영 학교 비율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또래조정 · 상담, 자치법정 운영현황 (2점) 운영현황 (2점)	배점 기준	2점 33%이상	1.6점 25~33%미만	1.2점 20~25%미만	0.8점 15~20%미만	0.4점 15%미만

#### □ 자료출처 및 기준

- 정부단위 운영실적 : 교육부 · 법무부 보유 자료
- 교육청 · 학교자체 운영 실적 : 시 · 도교육청 보고자료

#### 4.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 학부모 조치

##### 평가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학부모 선도 교육

###### □ 측정산식

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비율(50%) :  $\frac{\text{피해학생보호조치비율} + \text{가해학생선도조치비율}}{2}$

②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50%)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비율

###### □ 자료출처 및 기준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및 이수 내역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내역

###### □ 평가서식

######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평정척도 및 점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0.5점)	100%	95%이상 100%미만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5%미만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0.5점)	100%	95%이상 100%미만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85%미만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5.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치유지원

평가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치유 지원
------	------------------------

### □ 측정산식

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전용 기관(50%) :  $\frac{\text{피해학생 전용기관} + \text{가해학생전용기관}}{2}$

② 가해학생 장기 위탁기관(50%) : 6개월 이상 장기 위탁교육기관 수(Wee스쿨)

### □ 자료출처 및 기준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 계획,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학생 이수 인원 내역
- 가해학생 치유·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학생 이수 인원 내역

### □ 평가서식

####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평정척도 및 점수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전용 기관	교육지원청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전용기관 각각 1개 이상	교육지원청별 피해학생 전용기관 1개 이상	교육지원청별 가해학생 전용기관 1개 이상
	0.5점	0.3점	0.1점
가해학생 장기 위탁기관(Wee스쿨)	시·도교육청별 6개월 이상 장기위탁기관 1개 이상	시·도교육청별 3개월 이상 장기위탁기관 1개 이상	시·도교육청별 3개월 미만 장기위탁기관 1개 이상
	0.5점	0.3점	0.1점

## 6.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평가목적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필요

### □ 측정산식

- 연간 3차시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학급 비율

$$= \frac{\text{시도별 2013년 3차시 이상 수업실시 학급수}}{\text{시도별 2013년 전체 학급수}} \times 100$$

- 성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 비율 =  $\frac{\text{시도별 2013년 연수참여 교직원수}}{\text{시도별 2013년 전체 교직원수}} \times 100$

- 성폭력 예방 학부모 홍보실적

$$= \frac{\text{시도별 2013년 반기별 1회 이상 학부모 홍보학교수}}{\text{시도별 2013년 전체 학교수}} \times 100$$

※ 학부모 홍보(인정 예시) : 학부모 직접교육, 가정통신문·리플렛 등 유인물 배포 등

### □ 자료출처 및 기준

- 학생·교직원·학교수 : 교육부 소관자료 및 2013년 교육통계연보

### □ 평가서식

###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평정척도 및 점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학생 예방교육 (0.5점)	배점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기준	90%이상	80~89%	70~79%	60~69%	60%미만
교직원 연수 (0.5점)	배점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기준	90%이상	80~89%	70~79%	60~69%	60%미만
학부모 홍보 (0.5점)	배점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기준	90%이상	80~89%	70~79%	60~69%	60%미만

## 7.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평가목적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 측정산식

$$\textcircled{1} \text{ 학생보호인력 비율} : \frac{\text{학생보호인력 배치 학교 수}}{(\text{전체 학교 수} - \text{학생수 30명 이하 학교 수})} \times 100 \times 0.8 +$$

$$\frac{\text{학생보호인력 2명 이상 배치 학교 수}}{(\text{전체 학교 수} - \text{학생수 600명 이하 배치 학교 수})} \times 100 \times 0.2$$

$$\textcircled{2} \text{ 어린이 안전서비스 운영 비율} : \frac{\text{어린이 안전서비스 운영 학교 수}}{\text{전체 학교 수}} \times 100$$

$$\textcircled{3} \text{ CCTV 설치학교 비율} : (\frac{\text{CCTV 설치 학교 수}}{\text{전체 학교 수}} \times 100 \times 0.8) +$$

$$(\frac{\text{고화질 CCTV 2대 이상 설치 학교 수}}{\text{전체 학교 수}} \times 100 \times 0.2)$$

#### □ 자료출처 및 기준

- 학생보호인력 배치학교 수(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 등 학교 및 교육청이 계약 (위촉) 또는 지자체 등 외부기관에서 지원받는 학생보호인력도 포함 )
- 어린이 안전서비스(안심알리미, U-안심서비스 등 전용단말기를 활용한 위치 기반 어린이 안전서비스) 운영학교 수(초등만 해당)
- CCTV 설치학교 수 : 소관부서 자료(13.12.31 기준), 고성능 CCTV 기준 : 100만화소 이상
- 전체학교 수, 학생 수 30명, 600명 이하 학교 수 : 2013년 교육통계연보(13.4.1 기준)

#### □ 평가서식

학교급	조성 학교 수				학교 수			비율(%)			
	학생 보호인력		어린이 안전 서비스	영상정보 처리기기		전체	30명 이하	600명 이하	학생 보호인력 배치	어린이 안전서비스 운영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1명	2명 이상		설치	100만 이상						
	(A)	(B)	(C)	(D)	(E)	(F)	(G)	(H)	$[(A/(F\cdot G)) \times 100 \times 0.8] + [(B/(F\cdot H)) \times 100 \times 0.2]$	$(C/F) \times 100 \times 0.8 \} + [(E/F) \times 100 \times 0.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정척도 및 점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움터지킴이 (0.5점)	95%이상	80%이상 95%미만	65%이상 80%미만	50%이상 65%미만	50%미만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안심알리미서비스 (0.5점)	100%이상	85%이상 100%미만	70%이상 85%미만	55%이상 70%미만	55%미만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CCTV 설치학교 (0.5점)	85%이상	84%이상 83%미만	83%이상 82%미만	82%이상 81%미만	80%미만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8. 학교폭력실태조사 참여율

평가목적

학교폭력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

### □ 측정산식

- 실태조사 참여율(%) 평균

$$= ([1,2차실태조사참여율평균] - [참여율50%미만학교비율]) \times \frac{50}{100}$$

### □ 자료출처 및 기준

- 한국교육개발원 내부 통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예정  
※ 별도 자료 제출 불요

###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평정척도 및 점수

- 실태조사 참여율(%) 평균 산출값

## 9.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

평가목적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측정산식

- 자치위원 연수 참여율

$$= \frac{\text{연수 참여 자치위원 수}}{\text{전체 자치위원 수}} \times 100$$

자료출처 및 기준

- 연수 기본 계획 또는 시행 공문

평가서식

학교급	전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수(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참여 위원 수(B)	비율(%) [C=(B/A)×100]
초			
중			
고			
합계			

평가방법 : 절대평가

평정척도 및 점수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	80% 이상	70%~79%	60%~69%	50%~59%	50% 미만
	0.5	0.4	0.3	0.2	0.1

## 10.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비 지원

평가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치료 제도의 정착 및 관심도 제고
------	---

### □ 주요 평가내용

- 학교폭력에 대한 우선치료 및 구상실적, 보상시기의 적절성, 홍보실적

###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측정산식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건 수만 포함)건 수 중 신청 건 수

$$= \frac{\text{보상신청 건 수}}{\text{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필수 의결 건 수}} \times 1,000$$

- 보상신청 건 수 중 보상 건 수 =  $\frac{\text{보상 건 수}}{\text{보상 신청 건 수}} \times 100$

- 구상실적 =  $(\frac{\text{회수 건 수}}{\text{보상 건 수}} \times 50) + (\frac{\text{구상 금액}}{\text{보상 금액}} \times 50)$

- 선치료비 청구 후 지급시기(평균) : 법정기간 준수 여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비 제도에 대한 홍보실적 :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홍보 실시 여부

### □ 평가서식

- 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만 포함)건 수 중 신청 건 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만 포함)건 수 (A)	선치료 신청 건 수 (B)	비율 (B/A) × 1,000

## ② 보상신청 건 수 중 보상 건 수

보상신청 건 수 (A)	보상 건 수 (B)	비율 (B/A)×100

## ③ 구상실적

보상 건 수 (A)	회수 건 수 (B)	건 수 비율 $C=(B/A)×100$	보상 금액 (D)	회수 금액 (E)	금액 비율 $F=(E/D)×100$	계 (C+F)

## ④ 선치료비 청구 후 보상시기(평균)

14일 이내	14일 초과~28일 이하	28일 초과

## ⑤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비 제도에 대한 홍보실적

우수	보통	미흡

## □ 평정척도 및 점수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만 포함)건 수 중 신청 건 수

구분	4이상	2.5이상~4미만	2.5미만
배점	0.2	0.1	0

- 보상신청 건 수 중 보상 건 수

- (신청 20건 이상)

구분	85이상	80이상~85미만	80미만
배점	0.2	0.1	0

- (신청 20건 미만)

구분	95이상	90이상~95미만	90미만
배점	0.2	0.1	0

- 구상실적(보상건수 + 보상금액)

구분	30이상	15이상~30미만	15미만
배점	0.2	0.1	0

- 선치료비 청구 후 보상시기(평균)

구분	14일 이하	14일 초과~28일 이하	28일 초과
배점	0.2	0.1	0

- 홍보실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0.2	0.1	0

□ 자료출처 및 기준

- 시·도교육청 보고자료

# 연 수

#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인천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배승민

<연수자료 별도 파일(ppt)>

2013 여름방학 대비  
학생부장 및 생활지도 전문직 회의

2013년 7월 5일 인쇄

2013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